

의안번호	2211205
의 퇴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5. 8. 11.
추 계 번호	25D36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읍·면·동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 인구가 50만 이상인 개표소에 9명의 개표참관인을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6억 3,400만원, 2030년 103억 5,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59억 4,900만원(연평균 51억 9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 (지선)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합계	연평균
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(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)	10,634	—	4,960	—	10,319	25,913	5,183
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추가 배치 (안 제181조제2항)	—	—	—	—	36	36	7
합계	10,634	—	4,960	—	10,355	25,949	5,190

- 주: 1.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(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)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추가 배치(안 제181조제2항)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본 추계에서는 인구 수가 3만명 이상인 읍·면·동에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3. 2025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3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읍·면·동 수를 산출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해당 읍·면·동에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8조제1항제5호 (사전투표소의 설치) 신설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읍·면·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81조제2항 (개표참관)	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9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※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8조제1항제5호 (사전투표소의 설치) 신설	0	—
2	안 제181조제2항 (개표참관)	0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읍·면·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

-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, 본 추계에서는 인구 수가 3만명¹⁾ 이상인 읍·면·동에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읍·면·동 단위의 인구를 다루지 않아 현 시점에서 읍·면·동 단위의 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읍·면·동 단위의 인구변화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⁾
-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(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)

- 개정안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읍·면·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, 2028년 국회의원선거, 2030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사전투표소 수에 1개소 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사전투표소 수) 개정안에 따라 공직선거 시 추가로 설치·운영되는 사전투표소 수량은 425개소
 - －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수(2025년 6월말 기준) 자료³⁾에 따르면, 인구가 3만

1) 2025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, 읍·면·동의 평균 인구는 14,157명으로 추정되고 본 추계에서는 약 2배에 달하는 3만명 이상 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3) 공공데이터포털(<http://data.go.kr>)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 수(검색날짜 2025.7.23.)

명 이상인 읍·면·동은 총 425개

- 추계기간 동안 공직선거가 있는 해인 2026년, 2028년에 425개소, 2030년에는 2번의 선거가 있으므로 850개소의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

○ (1개소 당 비용) 사전투표소 1개소 당 비용은 2026년 2,502만원, 2030년 1,214만원으로 추정

- 사전투표소 1개소 당 설치·운영비용은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설치단가인 1,018만원⁴⁾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
- 다만,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⁵⁾ 1,381만원⁶⁾을 추가

[표 2] 사전투표소 1개소 당 비용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6 (지선)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
1개소 당 설치·운영비용	1,121	1,144	1,167	1,190	1,214
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	1,381	-	-	-	-
합계	2,502	1,144	1,167	1,190	1,2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6억 3,400만원, 2030년 103억 1,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인구 3만명 이상 읍·면·동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·운영에 따른 소요비용: 2026~2030년

구분	2026 (지선)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
수량(A, 개소)	425	-	425	-	850
1개소 당 비용(B, 만원)	2,502	-	1,167	-	1,214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10,634	-	4,960	-	10,3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2022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설치·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액은 총 35,754백만원으로 1개소당 설치·운영 단가는 1,018만원(35,754백만원 ÷ 3,512개소)으로 추정

5) 사전투표소 설치 첫해에는 노트북, 발급기 등 사전투표운용장비 제작이 필요하며, 내구연한(5년 정도)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5년 동안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6)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예산 편성 기준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은 1개소 당 1,254만원(330만원 × 3.8대)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 1,381만원으로 추정

나.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추가 배치(안 제181조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9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현행법에 근거하여 공직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선거 시 관할구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개표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별로 3명씩 개표참관인이 추가로 배치됨
- 본 추계에서는 2030년 대통령선거 시 추가로 배치될 개표참관인 인원
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
 - (개표참관인 추가 인원)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선거 시 추가로 배치될 인원은 165명
 - 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관할구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개표소는 총 11곳이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수는 5개
 - － 개정안에 따라 정당별로 3명씩 추가로 선정하여 신고하므로 총 165명(=개표소 11곳×정당 5개×개표참관인 3명)
 - (1인당 비용) 2025년 기준 217,000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일당 10만원이고 투표종료 후 오후 6~7시부터 익일 오전 5~7시 사이에 근무하여 2일로 산정하며, 식대 7,000원을 2회 지급하고 간식비 3,000원이 소요되어 총 217,000원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선거 시 관할구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개표소에 개표참관인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0년 3,600만원(=165명×217,000원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읍·면·동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고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 인구가 50만 이상인 개표소에 9명의 개표참관인을 두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6억 3,400만원, 2030년 103억 5,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59억 4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 (지선)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합계	연평균
사전투표소 추가 설치	10,634	—	4,960	—	10,319	25,913	5,204
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추가 배치	—	—	—	—	36	36	7
합계	10,634	—	4,960	—	10,355	25,949	5,2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인구 수가 3만명 이상인 읍·면·동에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읍·면·동 기준 인구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